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313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에는 지방공기업이나,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예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,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,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목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현행 기금의 용도에는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함 (안 제5조제1항제2호)

나. 신설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관련 명칭과 일치하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방공기업 명칭 조문 개정(안 제4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 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 동의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갈등 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결과(2016. 6.30. ~ 7.20.) : 의견없음
- (2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별도 붙임
- 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송선미(☎ 2133-6810)

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의 예수금

제4조제1항제8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기금"을 "기금,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u>신·구 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4조(기금의 재원) ①
1. (생 략)	· 1. (현행과 같음)
2.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하는 지방공기업이나, 서울특별 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으 로부터의 예수금	2.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의 예수금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기타</u>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부터의 출연금	8. <u>그 밖에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	제5조(기금의 용도) ①
도에 사용한다.	·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별회계 및 다른 <u>기금</u> 으로 융	2 <u>기금, 서울특</u>
자	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
	립한 지방공기업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기타</u>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	6. 그 밖에
한 경비의 지출	

개 정 안 혅 햀 제11조(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제11조(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의 설치)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 의 설치) ① -----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 금운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기타</u>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사항 5. 그 밖에 -----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u>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u> <u>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</u>

- 1 비용발생 요인
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〈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〉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.

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융자 뿐만아니라 서울시가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개정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융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제3조의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무관 송선미(2133-6810)